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요청 및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95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요청 및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6.
3. 회부연월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요청 및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과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u>요청할 수 있다.</u>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① - ----- ----- ----- <u>국민건강보</u> <u>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u> <u>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u> <u>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u> <u>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u> <u>에</u> ----- ----- ----- ----- ----- ----- <u>-요청하거나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u> <u>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u> <u>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u> <u>게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을</u> <u>요청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 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신설>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신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자료
<신설>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신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자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우선,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58조는 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공공단체¹⁾에 대하여 업무²⁾상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1)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그리고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공사는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법원행정처에 채무자의 재산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다른 법령 또는 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를 취득하여 국내채권 회수에 활용하고 있음.

[표 2]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자료요청·취득 현황

자료요청 기관	요청자료	빈도	자료협조 의무화 여부
국토교통부	부동산	수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제공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연1회	건강보험공단 재량 (신·기보 동일)
법원행정처	공탁금	연2회	건강보험공단 재량 (신·기보 동일)

그러나 일반적인 재산정보와 달리 과세정보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 3] 법률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u>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u> ③ <u>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1. ~ 9. (생략)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 ⑦ (생략)
--

이 때 현행 「무역보험법」과 같은 일반적인 자료요청 조항에 의해서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는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³⁾⁴⁾을 받으므로 일반적인 자료요청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과세정보 요청을 위해서는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며, 신용보증기금의 경

3) [법제처 09-0365, 2009. 1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의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참고로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대해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 참조

우에도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여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2014년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하여 과세정보 요청 근거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표 4] 과세정보 요청 규정 입법례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⁵⁾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기금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도 과세정보 요청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교적 저조한 것

5) [시행 2014. 4. 15.] [법률 제12263호, 2014. 1.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으로 평가되는 국내채권의 회수율(참고자료 참조)을 제고하려는 것임⁶⁾. 이를 통해 기금의 순자산을 확충하고 무역보험 및 보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아닌 기금관리주체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세청 의견⁷⁾을 고려하여 과세정보 범위를 괄호 안에 명시하고 후단에 따라 과세제공 요청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개정⁸⁾된 바 있음.

개정안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과세정보 범위를 각 호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과도한 정보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⁹⁾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6) 출처: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 11.

(2)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국내채권 회수실적 제고 및 적정 추심비용 산정 필요(pp 474)

7)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중략)… ② 과세정보의 조세 목적 외 제공은 행정의 효율성 등 공익목적의 국가기관간 협력의무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금관리주체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하 생략)…**

출처: 「신용보증기금서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2.11.) (의안번호제 1901120호, 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8)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9)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자료요청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권한행사 범위를 명확화하고 책임성 확보에 용이하므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및 가상 자산사업자는 최근 제정¹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¹¹⁾·규율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으로 인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 등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재산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10)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규모, 시가총액, 및 이용자 수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관세청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음¹²⁾.

[표 5]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 분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1.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평균 거래규모	6.0조원	7.3조원	6.4조원
	총영업손익	5,813억원	7,415억원	6,185억원
	원화예치금	5.0조원	10.7조원	6.2조원
2.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56.5조원	107.7조원	95.1조원
	가상자산 종목 수	1,207개	1,357개	1,538개
	- 중복상장 제외시	554종	598종	653종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 수	285개	287개	279개
	가격변동성((최고가-최저가)/최고가)	70%	68%	72%
3. 이용자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	778만명	970만명	1,077만명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30대	30대
	1백만원 미만 보유	567만명	684만명	804만명

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5.5.20., '25.9.30.) 재정리

12)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가상자산 이용 범죄 단속 통계 >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건수	45	51	32	26	32	186
금액	18,421	65,009	17,727	11,579	24,632	137,368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026. 2. 5.)

이를 고려하면 공사가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이전 내역 등을 파악하여야 재산정보 누락 또는 은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예금자보호법」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음¹³⁾.

동 개정안 역시 최근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채권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456

13)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30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이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함.

참고

국내채권 연령별 보유현황 및 회수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초 채권(A)	28,948	34,273	33,955	34,964	24,992	24,965	25,463
1년미만	3,076	6,422	975	2,135	405	637	1,778
1년이상~2년미만	2,269	3,080	6,374	971	1,906	357	499
2년이상~3년미만	2,434	1,945	2,706	6,198	429	1,809	243
3년이상~4년미만	1,492	2,170	1,817	2,586	1,201	359	1,675
4년이상~5년미만	3,951	1,416	2,109	1,734	714	1,157	276
5년이상(a)	15,726	19,240	19,974	21,340	20,337	20,646	20,992
장기 미회수채권 비율(a/A)	54.3	56.1	58.8	61.0	81.4	82.7	82.4
신규 채권 발생액(B)	6,574	1,002	2,241	467	701	1,832	961
회수액(C)	298	237	337	160	136	141	338
상각 및 종결액(D)	951	1,083	895	10,279*	592**	1,193	2,540
연말 채권(A+B-C-D)	34,273	33,955	34,964	24,992	24,965	25,463	23,546
회수율(C/A)	1.0	0.7	1.0	0.5	0.5	0.6	1.3

주: * 출자전환된 채권금액 8,084억 4,800만원('22) 포함

** 출자전환된 채권금액 100억 7,800만원('23) 포함

*** '14년~'16년 신용보증사고 3건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발생액 1,176억원 포함